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80

제출년월일 : 2013.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후생복지에 관한 내용을 직원의 복지수요에 적합하게 설계·운영되도록 안전행정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정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명문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선택적 복지제도 적용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나.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안 제5조)
다. 후생복지사업 시행내용 구체화(안 제7조)
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명문화(안 제8조의2)
마.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항 명문화(안 제8조의3)
바.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사항

가. 입법예고 : 2013. 9. 12. ~ 10. 2 (제출된 의견 없음)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관련조문	평가기준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권고안 일부반영 - 안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신설

1) 감사담당관 권고안 일부반영 사유 :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이어서 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의 실질적인 이해관계 등의 발생소지가 적어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불필요하여 미반영하고 위원의 해촉규정은 반영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1) 관련조문 : 제3조제2항제1호

2) 검토의견 :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 성별 영향이 있음

3) 조치사항 : 개선안 미반영

제3조(적용범위)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현행	구청장 방침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	심의회 상정안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1. 휴직 중인 공무원	1. 휴직중인 공무원단, 질병·육아·가사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휴직기간을 예외로 하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4)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 미반영 사유 : 최초 휴직기간이 개인별로 다르므로 휴직기간 예외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서 구체적으로 결정하기 위함

라. '13년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3.10.10)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를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3호 중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을 ""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를 "소속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다음 각호"를 "서울특별

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를 "구"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소속 공무원"을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④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⑦ 그 밖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휴게실·매점·자판기·커피전문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제7조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순직공무원, 우수·효행공무원의 격려 등 직원"을 "소속공무원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속공무원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2.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5.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직원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매

지급

6.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2호 중 "제6조에서 규정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에서 규정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를 "후생복지제도"로, "공무원 6명 이내"를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제8조제5항 중 "위원회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

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 중 "구청장은 공무원"을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속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라 함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 범위----------.
<신 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 복

	지제도의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 소속공무원에게 --------.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 사람에게는---------- 따른 ---------- ----------.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중인 공무원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구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 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 소속공무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① -------- 소속공무원-------- ---------- ---------- ----------.
②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거나 일정한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④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공

	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신 설>	⑥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된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편의시설, 보건·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지원 시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내식당·휴게실·매점·자판기·커피전문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공무원과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휴양소·콘도 등의 확보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순직공무원, 우수·효행공무원의 격려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소속공무원의 ----------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
<신 설>	1. 소속공무원의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신 설>	2. 소속공무원의 생일 축하선물 제공
<신 설>	3.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및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신 설>	4.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신 설>	5.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직원 근무환경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매 지급
<신 설>	6.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 ----------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
②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각 호---------.
1. 제5조에서 규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4. 그 밖에 ---------- 회의에 부치는 ----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한다.
④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	④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6명 이내	1. 후생복지제도---------- ---------- 소속공무원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2인 이내	2. ---------- ------ 2명 ----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인 이내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마포구지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 한 차례만 연임----------.
⑥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후생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⑦ ----------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산의 범위----------.
<신 설>	제8조의2(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 ---------- ---------- ----------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제9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규칙) --------- 시행에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안전행정국 총무과 정우열
연 락 처	02-3153-8233